

부산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1가단3303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헌

담당변호사 정영천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강

담당변호사 박원환

변 론 종 결 2022. 11. 17.

판 결 선 고 2022.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7. 2. 20.자 매매계약을 46,052,6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052,6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C의 동생이고, D은 C의 남편이다.

나. C는 2017. 2.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7. 3. 3.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매매를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20. 9. 22.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 23.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남편 D과 공동하여 원고의 자금 46,052,610원을 횡령하였거나, D에게 자신의 금융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D의 위 금전횡령을 방조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위 횡령금을 배상할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C는 원고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매매를 하였는데, 이는 C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으로서 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인 손해배상채권 46,052,6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매매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는, C에 대한 원고 주장의

손해배상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을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50337호로 C와 D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2022. 7.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C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진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 부산진구 F(도로명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G) 소재 H아파트 I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5층 아파트

1층 내지 23층 각 506.12㎡

24층, 25층 각 253.06㎡

지하 500.8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산 부산진구 F 대 1984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J 철근콘크리트구조 111.41㎡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1984800분의 3245. 끝.

